

택시부제 폐(해)지 요청(동의)서

수신 :
참조 :
발신 :

제목 : 전국이 공평하지 못한 택시부제를 폐(해)지 한다.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택시부제는 공평하지 못한 강제규제에 해당한다.
3. 편파적인 대상을 지정하면 기업할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에 해당하다.
4. 지역에서도 편파적임 모범, 노약자, 대형, 등이 있으나 모두가 개인택시다.
5.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한다.
6. 귀 청에서는 택시를 대상한 택시부제는 공평하지 않도록 영업을 강제하고 있기에 혼란하여 판결내용 극히 일부를 기수하여 드리며
7. 2004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285 사업개선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8. 2006년 01월26일 대법원2005두12503선고 개선명령 등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징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9. 2009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920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결
10. 2015년 09월 29일 광주 지방법원 사건 2014구합 1796 과징금 20만원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하였다.

하여 아래페이지 순에 기명날인한 자는 일관성 있게 강제규제인 택시부제가 전면 폐(해)지 될 때까지 자유롭게 개인리듬 조절하여 영업을 할 것을 귀청에 본 지면으로 요청합니다.

순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성 명	서 명 날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1페이지 서명의 내용을 직접 읽고 동참함을 기록서명 합니다.

순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성 명	서 명 날 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제1페이지 서명의 내용을 직접 읽고 동참함을 기록서명 합니다.

순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성 명	서 명 날 인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제1페이지 서명의 내용을 직접 읽고 동참함을 기록서명 합니다.

순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성 명	서 명 날 인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